2004. 4.

條例案審査報告書

○ 충주시공공기관등의충주유치위원회운영조례안
○ 충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
○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總 務 委 員 會

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조 례 안	제안일자	회부일자	상정일자	의결일자	제안설명
충주시공공기관등의 충주유치위원회운영 조례안	2004. 4. 1	2004. 4. 6	2004. 4. 8	2004. 4. 8	기획감사 과 장
충주시세조례중개정 조례안	〃	〃	〃	〃	세정과장
충주시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	〃	〃	〃	〃	체육시설 관리소장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충주시공공기관등의충주유치위원회운영조례안

1) 제안이유

○ 수도권소재 공공기관 등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등을 충주지역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공공기관등의충주유치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코자 함

2) 주요골자

○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3조, 제4조)

○ 회의운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(안 제14조)

○ 시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(안 제15조)

나. 충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

1) 제안이유

○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과 일치하도록 하고,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개선·보완 하고자 함

2) 주요골자

○ 서류송달의 방법을 등기우편, 하부기관을 통한 직접교부 송달하던 것을
⇒매년 부과고지하는 납세고지서 1매당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, 전자우편으로 송달 할 수 있도록 조항신설(안 제6조의1)

○ 현재 교통세액의 1,000분의 115인 주행세 법정세율을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**교통세액의 1,000분의 175로 인상(안 제28조의3)**

○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(2003.9.25, 2003헌바16)의 취지에 맞추어 신고납부 의무를
⇒신고의무와 납부의무를 분리하여 가산세 적용(안 제28조의4)

다.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1) 제안이유

○ 체육시설을 다양한 용도의 주민 문화여가 공간으로 활용하고 공연예술 문화를 활성화 하고자 함

○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여 체육시설 관리·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

2) 주요골자

○ 관람 수입에 의한 사용료와 보증금을 인하하고자 함(안 제11조제1항 및 제12조 제1항)

○ 제7조(사용제한)와 중복되는 규정 삭제(안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충주시공공기관등의충주유치위원회운영조례안

○ 본 조례안은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되어온 지방관련 3대 특별법이 2003. 12. 29일 국회에 통과됨으로서 범국민적 공감되가 형성되어

○ 충청권내 신행정수도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맞추어 우리시에 수도권소재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하려는 것임

나. 충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

○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현행제도의 일부를 개선·보완 하고져 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임

－제6조의1을 신설(서류송달의 방법)

·서류송달 방법을 등기우편, 하부기관을 통한 직접교부를

⇒ 매년 부과고지하는 납세고지 1매당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통우편, 전자우편으로 송달할수 있는 조항 신설

－제28조의3(세율)

·주행세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,000분의 115에서

⇒ 1,000분의 175로 인상

－제28조의4(신고 및 납부 등)

·신고와 납무의무를 분리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

다.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○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와 보증금 징수를 인하하고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여 체육시설 운영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임

- 제11조제1항(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)
  · 관람료 수입의 20퍼센트징수 ⇒ 10퍼센트로 인하
- 제12조제1항(보증금)
  · 관람권 검인액의 20퍼센트 ⇒ 10퍼센트로
- 제17(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)
  · 중복되는 규정 삭제
  - 1호 :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
  - 4호 :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

4. 질의·답변 요지

가. 충주시공공기관등의충주유치위원회운영조례안

▶**질의** : 공공기관유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제정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수는?
○답변 : 자치단체 파악후 의원간담회의시 제출하겠음

▶**질의** : 충주유치에 긍정적인 업체 선별을 위해 유치 노력 경과는?
○답변 : 조별로 유치기획단을 편성하여 각 기관 방문 유치의사 타진

나. 충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

▶**질의** : 교통세액 "1,000분의 115"를 "1,000분의 175"로 인상하는 기준은?
○답변 : 유류세액 인상에 따라 운수업계 재원확보 등을 위한 인상 기준임

다.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▶**질의** : 체육관 연간 관람료 수입은?
○답변 : 2003년도 629만원 정도임

5. 심사결과

가. 충주시공공기관등의충주유치위원회운영조례안 : 수정의결
나. 충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: 원안가결
다.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: 원안가결

6. 붙 임

가. 충주시공공기관등의충주유치위원회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1부
나. 충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부
다.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부. 끝.

충주시공공기관등의충주유치위원회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충주시공공기관등의충주유치위원회운영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"공공기관 등" 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,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, 그 밖의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.

안 제15조를 삭제하고, 안 제16조를 안 제15조로 한다.

〈수정안 대비표〉

제 정 안	수 정 안
제2조(정의) "공공기관 등" 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,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, 그 밖의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제2항의 기업 및 대학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기관을 말한다.
제15조(시상금 등)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.	(삭 제)
제16조(운영세칙) (생략)	제15조(운영세칙) (제정안과 같음)